## 2021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소관)

2023. 9.

대한민국정부

## 2021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구	분		계	조 치	결 과	
		ı	T.		21	조치중	조치완료	
	여	성	정	책	13	1	12	
여	가	족	정	책	11	3	8	
성	청	소	- 년 정	책	33	2	31	
가 족	권	익	증	진	39	5	34	
부	기			타	2	-	2	
	소 계				98	11	87	
	한국	구양성평분	등교육진	흥원	1	-	1	
산 하	한글	구청소년	활동진	흥원	2	_	2	
	한국	¦청소년싱	-담복지개	발원	-	-	-	
명 명 7	한 -	국건 강 /	가정진-	흥 원	1	-	1	
기 관	한 -	국 여 성 역	인권진-	흥 원	1	-	1	
		소	계		5	-	5	
		합 :	계		103	11	92	

## 공백

## 〈작성목록 및 조치결과〉

			<b>조</b> ラ	1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1	코로나19가 직장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원격근무자 차별 방지 근거 마련할 것		0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여성 생애주기 관련 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0
	3	해양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을 추진할 것	0	
	4	과학기술분야 여성 참여 적극 권고 및 성별 편중 완화 지침을 마련할 것		0
	5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사회의 다양성 반영 및 정부위원회 철저 한 관리 필요		0
	6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의 성별을 균형 있게 운영할 것		0
여성 정책	7	낙태 관련 컨센서스 마련을 위한 노력 및 기본적인 정보를 제 공할 것		0
	8	임신중절수술 관련 실태 파악, 불법 낙태약 근절 방안 마련 등 보편적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것		0
	9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의 기관별 격차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		0
	10	'교대제 근무' 관련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0
	11	중장년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것		0
	12	새일여성인턴 지원금 현실화와 인턴 종료 후 고용유지를 강화할 것		0
	1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징계받은 강사에 대한 제재조치 를 강구할 것		0
	14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0	
가족	15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할 것		0
정책	16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할 것		0
	17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0

				시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18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제한 조치관련 체계를 마련할 것		0
	19	1인 가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호자 동의 요구 관행 개선	0	
	20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원 등 미혼부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할 것		0
	21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0	
	22	양육비 미이행시 제재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양육비이행원의 양육 비 신청 및 이행 통계관리 방식을 체계화하고, 현행화 할 것		0
	23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 발굴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		0
	24	가족친화 기업관련 철저한 사후점검시스템을 마련할 것		0
	25	청소년 활동 활성화,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예산 확대		0
	26	지방청소년 문화 인프라 구축 노력		0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필요		0
	28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보편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0
청소년	29	모든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청소년증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0
정책	30	초등학교 성인물 이용교육 실시		0
	31	유해매체 모니터링 협력체계 개선		0
	32	글로벌플래닝팀 채용 예산확보 등 잼버리 준비 만전을 기할 것		0
	3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서비스 확대		0
	34	인터넷드림마을의 권역별 설립 및 지원내용·연령확대		

			조치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35	상담전문가 양성에 국한된 청소년 자살·자해 대응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할 것		0
	36	인터넷드림마을의 권역별 설립 및 지원내용·연령확대		0
	37	청소년 자살·자해 대응정책을 체계화 및 강화할 것		0
	38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0	
	39	상담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상담 개선책 마련 필요		0
	40	1388 콜센터 구축 및 전화상담 전담인력 배치		0
	41	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		0
	42	교육부 긴급상황 대응체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0
	43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0
	44	학교 밖 청소년 수요 충족 지원 프로그램 확충 필요		0
	45	학업중단 고등학생 정보 자동연계		0
	4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율 제고 및 건강검진 확대		0
	4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접근성 및 국가건강검진 일원화		0
	4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모니터링		0
	49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 재정비		0
	50	학교 밖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확대		0
	51	학교 밖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0
	52	지역기반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시스템을 확대할 것		0
	53	가정폭력 등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시 관련 규정 개선 필요		0
	5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완화	0	
	55	자립지원관 전국에 균형적으로 설치 필요		0

			<b>圣</b>	시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56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광역 단위 설립 검토		0
	57	청소년 지원시설이 부족한 지역 시설 확충 필요		0
	58	독립기념관 토지사용료 부담 최소화 필요		0
	59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 협의		0
	60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데이트폭력 방지 대책 강구		0
	61	간접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포함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마련할 것		0
	62	약물 이용 성범죄 처벌 등 약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		0
	63	성폭력 실태조사 시 약물 이용 성범죄 관련 사항 포함		0
	64	리얼돌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여 포괄적인 규제 방 안을 마련	0	
	65	권력형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		0
권익증진	66	'20년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보다 강화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 범죄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0
	67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0
	68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0
	69	해바라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		0
	70	군 내 성폭력 사건 통보 개선 및 군 성폭력피해상담소 지정·지원		0
	71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전 국민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0
	72	성매매 피해자에게도 거주관련 지원이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0
	73	대학생도 성매매 의무교육 대상이 되도록 법개정 검토		0

			조카	시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74	공동대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가정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0
	75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0
	76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0
	7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 및 교육·홍보방안 마련		0
	78	국민에게 공개·고지되는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제고 방안 마련		0
	79	성범죄자 신상공개·고지제도의 인지도 및 열람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0
	80	신종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0	
	81	청소년 성매매 피해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강화 개선책 마련		0
	8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방안 검토		0
	83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 실태조사를 시급히 수행할 것	0	
	84	의무신고자 대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관련 법률 사항 홍보 및 교육		0
	85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예방 및 법률 개정 사항 홍보 강화		0
	8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월 간병비 지원액을 확대 등		0
	87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 노력	0	
	88	서울 기억의 터 미기재 피해자에 대한 확인		0
	89	나눔의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0	
	90	공공기관의 성비위 행위 관련 징계사유 규정 여부를 관리할 것		0

			<b></b>	시결과
구분	연번	지 적 사 항	조치 중	조치 완료
	91	여성폭력 예방 업무 종사 공무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효과 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공무원 성범죄 감소 대책을 마련할 것		0
	92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기본통계 관리 및 2차 피해 방지지침 마련		0
	9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0
	94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종합지원센터 내실화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0
	95	해바라기센터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조사 실시		0
	96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리방안 검토		0
기타	97	여가부 폐지여론 등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0
714	9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개정안을 검토할 것		0
한국양성 평등교육 진흥원	99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성평등 강연 자료를 수정·보완할 것		0
한국청소	100	위드 코로나 시기 청소년활동 지원방안 마련		0
년활동진 흥원	101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관리감독 대책 강화		0
한국건강 가정진흥 원	102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현행화하여 양과 질을 제고할 것		0
한국여성 인권진흥 원	10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0

## 2021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여성정책]

- 1. 코로나19가 직장 내 성별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실시하고, 원격근무자들이 직장 내에서 승진, 임금 등과 관련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
-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022년 여성관리자 패널조사」에 성별에 따른 재택근무 등 일·생 활균형제도의 활용 및 활용자에 대한 평가 시 불이익 여부 질의 문항 포함하여 연구 추진
- 한편,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고용부)에 재택 근무를 하더라도 성과평가에 있어서 근로자가 차별 등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 적인 성과평가 및 인사관리 제도를 구축하야 할 것을 기 명시

-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중 여성의 건강지표와 관련하여 여성의 건강 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월 경장애 경험률, 경구피임약 복용 률, 임신중단 경험률, 폐경 연령 및 관련 증상 등 여성의 생애주기 에 따른 지표를 포함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표 개선을 위 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결정요인, 성별 간 건강 격차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협조 요청하였음 ('21.12월)
  - 향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표가 개선·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3. 해양경찰청 성비위 근절 및 성차 별 구조·문화 개선을 위하여 해양 경찰청 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 설을 추진할 것
- 기존 신설기구 평가 결과 2년 유지(~'23.12월까지)로 평가기간이 연장('23년 예정)되었음
- 추후 평가결과를 고려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음

- 4.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방지 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 술분야의 여성연구자 참여 비율을 높이거나 여성이 없는 연구실에 여성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과학 기술분야 성별 편중 완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과 연계하여, 국립대 여성교수(교육부), 4대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승진 목표제"를 도입·운영하여 이행관리 하고 있음
  -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하고('20년), 인공지능 분야 여성 연구인력 단계적 확대 및 여성인력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강화, 인공 지능 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 마련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개선권고 실시('21년)

## 5. 정책결정에 사회의 다양성이 반영 되고, 실질적인 여성대표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정부위원회 여성참 여율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

- 정부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실효적 관리를 위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제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1년 하반기 성별참여 현황조사부터 적용·시행하여 정부위원회 사전 및 사후관리 강화 등 후속조치 이행('22년~)
  - (임기도래 위원회 사전관리) 임기도래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임기만료 전 법정기준(40%) 준수 주기적 안내 등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여성인재DB 홍보를 통해 여성인재풀 확대 및 활용 제고
  - (연례적 법정기준 미달 위원회 사후관리) '21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성별참여 현황조사 시부터 3년('19~'21) 연속 부진 위원회 현황 주요회의체 보고 및 해당기관 추가 통보 등 정부위원회 개선권고 실효성 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

- 자 하는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청년 성평등 문화 추 진단의 성별을 균형있게 운영할 것
- 6. 청년 세대의 양성평등을 신장하고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은 동 사업의 젠더갈등 해소 효과성, 참여자 성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으며 내년부터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의제를 포함하고 상호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을 추진하겠음

## 7. 낙태죄 폐지 이후 후속조치로 안 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하게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 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정보를 제공할 것

- 위기여성이 임신(중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 상담기관<sup>\*</sup>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매뉴얼을 보급하였음('21.5월)
  - \* 여성긴급전화, 청소년전화, 가족상담전화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포럼을 공동 주최하였음 ('21.5월)
- 향후에도 위기여성·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음
- 8. 임신중절 수술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낙태약 근절 방안을 마련하며,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 타 부처와 협의,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반을 구축할 것
- 토론회\* 참석('21.9월), 발의 예정 법안 검토 등 「성·재생산 건강 및 기본법」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음
  - \* (주최)국회의원 남인순,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한국아동환경의원연맹
-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음('21.9~10월)
  - \* ① 청소년의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② 월경 건강 보장 ③ 피임법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④ 임신 중단(낙태)을 위한 의료 서비스 ⑤ 산모·신생아 지원 서비스 ⑥ 성병 등 성과 관련된 질환, 생식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책 수요
-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9.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가 각 기관 별로 격차 없이 시행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 구할 것
-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보고서에 포함(8월, 국무회의 보고)하여 이행을 독려함
  -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부진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음
    - \* 지자체 합동평가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정책 개선율 달성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
- 10. 간호, 돌봄 등 종래 여성이 다수 종사하던 영역에 대한 남성의 진출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성별 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남녀모두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이 다수 직종인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함('21.8~12월)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성평등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 관련부처에 개선권고\*를 완료함(\*22.12월)
  - \*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일·가정 양립 환경 마련, 실효성 있는 안전 보건교육을 통한 유해 물질 위험 최소화 등

- 11.50~60대 중장년 여성들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것
- 경단여성의 경력·적성 등을 고려한 유관분야 일자리 연계 및 지역산업 특성, 기업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통해 중장년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하고 있음
- \* 50대 및 60대 이상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취업률 : ('21년) 74.2% → ('22년) 74.6%
- 초기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확대와 함께 장기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12. 새일여성인턴 지원금을 타 부처 인턴제와 형평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간종료 이후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여성일자리가 경력단절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있도록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일자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할것
- 인턴 참여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직장적응·고충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사업 지침을 개정하였음('22.10월)
  - 아울러, 조기 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경력단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 한편 지역 산업체·구인기업을 적극 발굴·연계하고, 고용센터·지자체·협회단체 등 지역 내 일자리 협력망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음
- 디지털 신기술 등 미래 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훈련을 확대 및 직업교육훈련 단가 인상(23년5% 인상) 등을 통해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이 희망 하는 양질의 알지라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21년 59개 → '22년 66개 → '23년 75개

## 1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부 터 '영구해촉' 징계를 받은 강사 가 공공기관 등에서 성교육 강사 로 초빙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 도록 공공기관이 강사를 초빙할 때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의 위촉 강사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해촉 강사는 강의를 할 수 없도록 벌칙 규정 을 신설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구 할 것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전문강사 위촉 및 관리규정」및 「전문강사 행동 강령」을 개정하였음(\*21.9.17.)
  - 전문강사 해촉·징계 세부사항 개정 및 진상조사 확대 등 관리 강화
  - \* 「전문강사 행동강령」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 재정립
  -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 시 강화된 강사관리 방안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해 안내('21.9월~)
- 공공기관에서 양평원에 강사 초빙 의뢰 시 위촉여부 확인 안내 공문 발송(\*22.6.)

## [가족정책]

- 14.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 육아도우미 대상 교육시범사업 및 국가자격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 아이돌보미 직무분석 기반 교육체계 개편 및 자격제도 도입 사전 준비('22.5~11)
- 민간육아도우미 교육 시범사업\* 운영('22.10.~11.)
- \* 교육기관 4개소, 9.20~10.10 접수 결과: 117명 신청 / 109명 수료
-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23.2월)
  - \* 국가자격제도입, 아이돌봄인력 양성체계 개편 등
- 국가자격제 도입 등을 위한「아이돌봄지원법」개정 추진
- \* 여가위 계류 중('23.4월~)
-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양성체계 개편
  - \* 내일배움카드 활용 및 민간육아도우미 양성교육과정 포함('24년~)
-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공공・ 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개발(~'23.12.)
   및 시범사업\* 운영('23.8.~10.)
  - \* 신규자 과정(2개소 2개반)/ 경력자 과정(2개소 3개반)

- 15.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하여 세부지침기준을 마련하여 부정수급 금액, 사안 의 경중 등에 따라 일관된 기준 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등을 하 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 일정금액 이상의 부정수급 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조치 의무화를 규정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하여 시행중
  - \* 보조금법 벌칙규정 또는 개별법 벌칙규정 부정수급 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 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수사기관(경찰서)에 문서로 고발조치
- 16.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 바일앱의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 편의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것
- 16.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및 모 아이돌봄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조진단 및 변경 바일앱의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로 성능 개선('22.5.3. 반영 후 일부 과부하 완화)
  -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 오픈 ('23.9.7. 시스템 전면 재구축 및 HW/SW 인프라 도입)
  -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이용 편의 제고
    - \* 사업 내용: 긴급·단시간돌봄 도입, 공공·민간 아이돌봄 교육·자격관리. 대화형 챗봇 도입
- 17.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보 미들과 원활한 업무 협의 등을 통하여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가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일에 맞추어 운영될 수 있 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자체 협의를 통해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가이 드라인'을 마련·배포('21.12월)
- 광역지원센터의 원활한 지정·운영을 위하여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아이돌봄 지원법」개정안을 정부 발의('23.3월)
  - \* (주요내용) 광역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변경
- 현재 8개 시·도에서 센터 지정·운영 중이며, 연내 최대 5~6개소 추가 지정 예상

시정·처리요·	구사항
(건의사항 :	포함)

- 18.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족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의 구체적 근거 규정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할 것
- '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이용제한 사유\* 집계기간(연 3회, 월 3회 등) 구체적으로 명시
  - \*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요구 연 3회 이상,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 이용가정의 부당행위로 아이돌보미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심리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등 사후관리 체계 마련 ("22.1월)
- 19. 1인 가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호자 동의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
- 의료 현장에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 하는 관행은 개선되는 추세임
  - \*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
- 향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음
- 20.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지원 등 미혼부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미혼부에 대해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구조 및 유전자검사비 지원<sup>\*</sup>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국민 홍보<sup>\*\*</sup> 완료('22년 하반기)
  -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4.17.시행)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를 완화하고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와 유전자 검사비 지원
  - \*\*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미혼부 자녀가 유전자검사 전부터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23.1월)

시정·처리요	-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21.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비 대지급 제 도 도입을 검토할 것
- ㅇ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회수 제고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22년 하반기)
-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23년) 및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음
- 22. 양육비 미이행시 제재조치 실효 성 제고를 위해 제재기준 조정 을 검토하고, 양육비이행원의 양육비 신청 및 이행 통계관리 방식을 체계화하고, 현행화 할 것
-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를 위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22. 4월, 시행 '22. 8.16)
- \* 양육비 채무액 기준 5천만 원 → 3천만 원으로 하향.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 추가
- 양육비 관련 신청 사건 진행 현황 전산시스템 연계\* 및 양육비 이행 현황\*\* 통계 구축('22.1~12.월)
  - \* 신청인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사건 진행 현황 검색 가능
  - \*\* 미지급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현황 파악으로 통계데이터 정확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손가족 지원 대상 발굴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
- 23.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손가족 실태조사 실시('23년)를 위해 조손가족 실태조사 사전연구 실시('22.6~12월) 및 본조사 실시 ('23.3월~12월)
  - 가족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확대를 통해 조손가족 지원대상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함
  - \* ('21년) 88개소 → ('22년) 93개소 → ('23년) 98개소 → ('24년) 전국 확대 목표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장이 실제 운영상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도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사후점검시스템을 마련할 것

○ 고용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가족친화 관련 법규 미이행에 따른 명단공표, 근로감독 등 결과를 조회하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개선권고, 인증취소 등을 조치하는 절차 마련 및 시행('21.12월)

## [청소년정책]

- 2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 력할 것
- 25.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이 청소년 활동 관련 각계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 관련 분야 연구용역\* 완료
  - \* 정책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22.12월)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국제교류,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강화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 포함
  - \*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활동디지털플 랫폼 구축 ISP' 추진 ('24년)
  - 또한, '24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위기청소 년 종합심리검사' 사업기간을 6개월에서 연중 상시 운영으로 확대위한 예산 확보 완료

## 26. 청소년 정책 추진 시 지방에 있는 청소년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청소년 문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것

- 수도권에 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경상권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호남권 센터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22년~),
  -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미설치 지역에 신규설치(22년) 하는 등 인프라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험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며,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을 통해 지역에 따라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에 노력하겠음
  - \* 청소년문회의 집 현황 : (20년) 294개소 → (21년) 314개소
- \*\* 운영(6개): 중앙수련원(천안), 평창수련원, 해양센터(영덕), 농생명센터(김제), 우주센터(고흥), 미래환경센터(봉화)
- \*\* 건립중 : 생태센터(부산 을숙도, 22.10월 준공), 진로직업 체험수련원(대구, 25년 준공)

- 27. 학교 밖 정소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 도록 하는 등 청소년육성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 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27. 학교 밖 청소년도 지방교육재정 이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 마련(22.10.) 및 교부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 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도록 하는 등 청소년육성기금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
  - \*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운영 중
    - \* 교육감의 학교밖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추진(23.4,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28.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보편지 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1.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당시,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재정소요 증가와 지자체 재정부담 문제 등이 있어, 지원 기준 및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음
- 현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지원
  하고 있으며,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 고려 필요
  - ※ 지원대상: 11~18세→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 2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모든 청소년이 보편적인 신 분증(청소년증)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2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를 국가 신분증에 청소년증을 포함('23.7월)하여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 공적신분증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함
  -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제정·시행('23.7월, 행안부)
  - 선거, 시험, 각종 우대 혜택할인 시 청소년증이 공적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외에 일반 청소년 발급·사용 중
    - ※ 유효 발급 건수 : 78만 4천여 건('22.12월 기준)
- 30.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물 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대책을 마련할것
- ○「(과기부)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부처(문체부·방통위·교육부· 여가부 등)와 협조하여 디지털 윤리교육(연 2만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연 3.4만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건강한 매체 이용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 '21년부터 청소년유해환경모니터링단을 통해 유튜브· 인터넷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에 청소년유해영상물에 대한 성인인증 등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 협력체계 운영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31.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결과 에 대한 사업자의 신속한 후속 조치 및 조치 결과 통보를 위해 협력체계 구조를 개선할 것
- '21년 추경사업인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단을 '22년부터 본 사업으로 운영,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 규제를 요청, 신속한 후속조치를 유도하는 등 협력체계를 개선하였음('22.3월)
    - ※ ('21년) 306,699건. ('22년 8월말) 531,721건 모니터링
-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및 한국스카우 트잼버리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 할 것
- 32. 글로벌 플래닝팀 인력 채용을 이 글로벌 플래닝팀 인력 채용을 위해 '22년 국비 예산 201백만원(지방비 468백만원)을 확보하였고, 조직위원회에서는 해당 인력을 채용하였음

- 년 지원 정책이 상담 위주이므 로 직접 치료 및 체험을 통한 치 유 서비스를 확대할 것
- 3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설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설치('14년) 및 운영
  - \* ('14~'23.9) 총 159회 운영, 3,698명 지원
  - '21년 신규 개원한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를 정서행동문제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치유를 위한 복합시설로 운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기반을 확충('22년~)
    - \* ('22년) 대구디딤 6회, 총 42명 수료, 연인원 504명 지원
    - \* ('23.9) 대구디딤 8회, 총 80명 수료, 연인원 960명 지원

## 34.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권역 별로 설립하여 청소년의 접근성 을 제고하고, 치유 지원 사업을 알코올, 약물, 도박 등에 대한 중독까지 확대하며, 지원 연령

을 24세로 상향 조정할 것

- '21년 신규 개원한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를 정서행동문제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복합 치유시설로 운영, '22년부터 호남권 디딤센터 건립을 추진
- '22년 하반기 인터넷 드림마을 및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에서 도박\*, 약물중독청소년\*\* 대상 치 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였고,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 \* 도박 위험군 대상 사이버도박 치유캠프: '2210월 1회 시범 운영 → '23.7월,11월 2회 운영
- \*\* 알콜 등 중독 위험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22.10월 1회 시범 운영 → '23.6월 1회 운영
- 년 자살·자해 대응정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할 것
- 35. 상담전문가 양성에 국한된 청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의 고위기청소년 상담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함
  - '23년 전국 상담복지센터에 확대 운영되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 시범운영 및 모형개발('22년). 전국센터 확대 운영('23년)
  - 자살·자해 예방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 청소년,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자살·자해예방교육 실시함
    - \* 자살예방교육전문가 양성 : ('21년)965명. ('22)1.040명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36. 정신건강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정서적, 정신적으로 취 약한 원인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집중 심리 클리닉<sup>\*</sup> 및 불안·우울 집중 심리클리닉<sup>\*\*</sup> 운영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의 고위기청소년 상담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함
  - \* 시범운영 및 모형개발('22년), 전국센터 확대 예정('23년)
  - \*\*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 시범 운영('22년)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종합심리평가 직접 수행 등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23.7월~)

- 37.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적 인 정신건강 상담이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종사자 자격기준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자격 기준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함('22.4월)
  - \* 별표2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자격 기준 개정
- 38. 전국 17개 시·도에 1388 콜센터 를 구축하고, 전화 상담 전담인 력을 배치할 것
- 청소년상담1388 통합콜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재 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22.1~5월)
- BPR/ISP 결과를 반영하여 1388 통합콜센터 구축· 운영('24년~) 예산 확보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	-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39. 청소년상담사의 장기근속 및 전 문성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채용 시 정규직으로 고용및 기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노력하도록지자체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음
  - '23년 전국 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에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였음
  - '2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인상 (1.7%, 정부안)하였으며, 향후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음
- 40. 교육부의 각 긴급상황 대응체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부와 연결체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할 것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21.12월,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 대책)에 피해 학생 보호·지원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되도록 반영함
- 41. 청소년 성소수자 실태조사 실지, 청소년 성소수자의 청소년 검터 이용 개선,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소수자 교육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 종사자 직무교육 및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시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였음
  - \* '성인지 기반 청소년상담의 이해' 과정 운영('22년~)
  - 또한, 청소년 성 관련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상담 매뉴얼을 개정하였음
    - \* '성상담(성소수자, 성교육, 성폭력 등)' 매뉴얼 개정(22.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
(건의사항 포함)	

- 42.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할 것
-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21년 9개 시·도 센터→ '22년 14개 시·도 센터)하였음
- 대입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을 확대하였음
  - \* ('21년 입시) 4개 대학 → ('22년 입시) 6개 대학 → ('23년 입시) 11개 대학
- 연중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및 강남 인터넷수능방송 수강권을 전국 센터에 배포하여 학업 지원을 강화하였음

-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에 자동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할 것
- 43.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 학생의 │ 사전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대상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확대\*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23.4.12,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 (현행) 초·중학교(의무교육) 단계 청소년 → (확대) 고등 학교 단계 청소년 포함

44.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홍보를 다양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인지도 제고 및 건강검진 수검률 개선을 위하여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홍보방법을 다각화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대폭 제고함
  - \* ('20년) 53.9% → ('21년) 86.0%
  - 건강보험공단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미수검자 전원에 대한 개인별 유·무선 안내를 강화하였음
  - \* 공단과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건강검진 안내 및 미수검자 대상 유·무선 수검 독려('21년, 유선 26,953건, 무선 84,581건)
  - 학교를 다니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및 편의점\*\* · PC방\*\*\*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하였음
  -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건강검진 상시 안내('21년, 3,205건)
  - \*\* 편의점 홍보
    - 디지털 스크린 홍보('21.11.18~12.17, 전국 3,272개 편의점)
    - PB상품(도시락) 홍보('22.1월, 7만2천여개)
  - \*\*\* PC방 온라인 배너 홍보('22.5월, 전국 PC방 295만회 노출)
-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 45.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 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 건 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으로 일원 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던 방식을 '20년부터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 하였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상담, 안내 및 수검 독려 등을 통해 청소년이 더욱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이미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검진을 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과 관련 복지부·교육부· 공단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22년~)중임
- 46.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주요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지속 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결과 주요 의심 질환에 대하여 확진검사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보훈병원 등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사후 관리에 더욱 힘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47.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정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것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기본 항목을 기존 17개 항목\*에서 26개로 확대\*\*
  - \* 척추, 혈압, 시력, 청력, 비만, B형간염, C형간염, 결핵, 구강검사 등
  - \*\* 9개 항목 추기(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 HDL·LDL콜레스테롤·중성지방 조사)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48.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근 로권익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 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지원 프로그램 및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협력 하여 근로권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근로권익 침해나 부당처우 사례 발견 시 17개 시·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음
- 49. 학교 밖 청소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가의 보 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질병관리청과 협력을 통해 '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 4,993명이 접종을 받도록 지원하였음
  - \* 신청 접수(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명단 취합(여성가족부) → 질병관리청 명단통보 → 우선접종 기간 내 예약 및 접종(의료기관)
- 질병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연령별(소아청소년 포함) 백신 접종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에게 안내하였음
- 50. 지역기반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확대할 것
- '22년도 지역자원 연계사업 대상지역을 3개소로 확대하였고('21.12월, 화성시, 시흥시, 김해시),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확대할 예정임
  - \* ('22년) 3개소 → ('23년) 5개소(+김포시, 전주시)
-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발굴해 한국어·진로 교육, 학습, 심리·정서지원 사업 등을 강화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51. 가정폭력 및 가정 내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 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도 록 「민법」 상 친권자의 거소지 정권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하 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2022년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가정폭력 및 학대 로 인한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

- 하여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할 것
- 5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반영 | 입·퇴소가 잦고 보호기간인 단기인 청소년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퇴소 직전 연속거주 요건을 직전 1년 연속 → 직전 6개월 연속으로 완화하였음

- 53. 전국에 균형적으로 자립지원관 을 설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편중에서 점차 대구, 충남, 부산 등 전국 확대 추세로, '23년 자립지원관 2개소 (강원, 제주)를 추가로 설치하였음
  - \* 서울·경기·인천(18년~), 대구·충남(20년~), 부산(21년), 대전(22년)
  -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전국에 균형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 54.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광역 단 위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검토 할 것
- 수도권의 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와 경상권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건립('21.11월 개원)되어 운영중이며, 호남권(익산, '22년~) 및 광주('23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 호남권 :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추진(22.9월), 설계착수(23.10월)
  - \* 광 주 :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추진(23.3월), 설계착수(23.12월)
  - 향후, 센터 운영의 안정화, 국가적 차원의 치유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음
- 55. 전국의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설 확충을 추진할 것
-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청소년복지시설 확대<sup>\*</sup>하고 있음
  - \* ('21년) 159개소 → ('22년) 166개소 → ('23. 9.) 167개소
- 56. 청소년 예산 중 독립기념관 임 대수입을 증가시키는 토지사용 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청소년 지원 예 산으로 확보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전체 부지(540,641㎡) 중 독립 기념관 소유 토지(420,716㎡)를 '01년부터 토지사용 협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토지사용료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면적 조정\* 및 사용료 산출 방법을 변경\*\*한 바 있음
  - \* (최초) 637,959 m² → (현재) 420,716 m² (△217,243 m²)
  - \*\* (최초) 개별공시지가 → ('07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개별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산출방법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으로 변경)
  - 향후, 토지사용 협약종료('24.10월) 후 재협약시 독립기념관 및 보훈처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용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57.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에 청소년과 임산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하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중수본에 의견을 제출('21.10.20)하였음

## [권익증진]

- 58.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 긴급전화 1366의 특화된 행정서비스,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화된 행정조치를 도입하고,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피해 및 지원 관련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속히 구체적인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데이트폭력 엄정대응 및 방지대책 이행 강화 관계부처(법무부, 경찰청) 협조 요청('21.12월)
- 1366을 통한 데이트폭력 상담 및 피해자 일시긴급 보호 실시
  - \* 1366 지원실적('21년) : 상담 9,824건, 긴급보호 188명
-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제정 추진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국회 제출('22.4.27.)
- 데이트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21.7~12월) 및 공표('22.8월)
- 59.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합당한 처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
- 데이트폭력 엄정대응 및 방지대책 이행 강화 관계 부처(법무부, 경찰청) 협조 요청('21.12월)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이행 점검 실시('21.12월말 기준)

- 60.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관리 관찰, 교정 교육 등 관련 기관들 과 협력하여 데이트폭력 방지 대 책을 강구할 것
- 교제 폭력 엄정대응 및 방지대책 이행 강화 관계 부처(법무부, 경찰청) 협조 요청('21.12월)
- 1366, 상담소 등을 통한 교제 폭력 상담 및 일시 긴급보호 등 지원
  - \* 1366 지원실적('21년) : 상담 9,824건, 긴급보호 188명
-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 예방 및 피 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제정 추진
  -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국회 제출('22.4.27.)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서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발굴' 안건 논의(경찰청, 민간위원 참석, '23.6월)
- 임대주택 등 긴급주거지원 대상을 교제폭력 피해자까지 확대('23.6월~)
- 61. 스토킹범죄의 직접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간접 피해자에 대한 보 호조치가 포함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할
- 61. 스토킹범죄의 직접 피해자 및 그 O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가족 등 간접 피해자에 대한 보 (정부안) 국회 제출('22.4.27.) 및 시행('23.7.18.)
  - \* 국가 등의 책무,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취학지원, 지원시설의 설치 및 업무, 사법 경찰관리의 현장조사, 벌칙 등
- 62.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을 지정하여 유통을 규제·처벌하고 약물 성범죄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제정하여 사건 발생 초기 증거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약물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과제\*를 포함하였으며,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 약물이용 성범죄 관련 신고, 대처방법 및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경찰청, 여가부), 약물 탐지기술 개발 및 대국민용 키트 상용화 추진(경찰청) 등

- 63. 성폭력 실태조사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피해 관련 통계를 구축할 것
- '22년 성폭력 실태조사 시 약물 이용 성범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 중이며, 실태조사결과 를 분석하여 약물 이용 성범죄 통계를 구축할 예정임
-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안내
  - \*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반영('22년)

- 64. 리얼돌의 수입·판매·유통을 금 지하고 리얼돌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로 규정하며 리얼돌 체험 방 운영을 규제하는 등 관련 부 처와 협의하여 포괄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64. 리얼돌의 수입·판매·유통을 금 이 아동·청소년 신체 형상 리얼돌 성기구를 규제하는 지하고 리얼돌을 아동·청소년성 개정안이 발의(최혜영·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안, '21년) 착취물로 규정하며 리얼돌 체험 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겠음
  - ※ (참고) 청소년보호법 상 리얼돌은 성기구로서 청소년에게 유통 금지 대상이며, 리얼돌 체험방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청소년유해물건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업, 리얼돌 체험방을 포함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기별 점검·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리얼돌 판매·홍보 사 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함
    - \* 방학기간, 개학직후, 수능 등 계기별 청소년 출입·고용·유해 표시 여부 및 청소년 출입·출입고용금지 등 점검·단속
  - \*\* 리얼돌 판매·홍보사이트 점검: ('21)92건---('22)95건---('23.8)205건

# 65. 국가기관등의 권력형 성범죄 관련 2차 피해 방지대책이 모두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가 권력형 성범죄의 신고를 방치하거나 회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할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 '21년에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로의 사건통보를 의무화하고, 현장점검 실시 및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등 권력형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제정이 의무화된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2차피해방지지침' 제정을 위해 '2차피해방지지침 표준안'을 안내('21.1.26) 하고, 제정실적 점검 및 점검 결과를 여성폭력 방지위원회 보고('21.10.26.)
- 최근 국정과제에 포함된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법 개정\*('23.4월, 시행 '24.4월)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 의한 사건일 경우 재발방 지대책 제출기간 단축 (3→1개월)하고, 사건 통보 및 재 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 66. 2020년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보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
-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처벌, 위장수사, 불법촬영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등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음
  - \* 디지털성범죄 관계기관협의체 운영(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검·경찰)
- 삭제지원 대상(허위영상물 등)과 요청범위(대리인도 기능) 확대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선제적 삭제 지원 등 피해 지원을 강화하였음
-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인식개선 홍보 및 정책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 초·중·고생 및 교사,학부모 등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23년 15종)

# 67.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의 수용인원 확대, 동 거 친족 성폭력이 의심되는 경 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 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친족 성폭력 피해 중 미성년 피해 통계 관리, 긴급주거지원제도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주거지원 제공 등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에 친족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친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만 19세가 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 입소기간 연장(2년) 및 퇴소시 퇴소자립 지원금(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친족 미성년 피해자 통계를 추가 산출·관리 ('22년~)하여 피해자 지원 관리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였음
- 친족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라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 하 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9조)에 따라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주거지원, 생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친족에 의한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반영('22년~)
- 68.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 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등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채널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동 제도를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해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 旣 안내 하였음('21.11.11)
  - 또한, 「'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제도'를 안내하였음('22.1월)

# 69.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종 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 액 등 의료기관이 보다 적은 부 담으로 해바라기센터를 안정적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 한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것

- '22년 해바라기센터 운영예산을 전년 대비 11% 확대하였고, 운영기관인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 티브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 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실적' 지표를 추가(22.6월)
- 또한, 해바라기센터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22.11월) 하였고,
-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에 해바라기 운영 실적 반영, 응급키트 처치료 인상\* 등 병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23년 예산을 증액\*\*하였음
- \* 응급키트 처치료 인상('23년) : 개당 7.5만원→10만원
- \*\* 해바라기센터 예산 증액 : ('22년) 174억원 → ('23년) 186억원(12억원↑, 7%)

- 70. 군 내 성폭력 사건 통보 매뉴얼 마련,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내 소통 등을 통해 국방부가군 내 성폭력 사건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철저히 통보할 수있도록 조치하고, 군 내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지정하여 지원할 것
- 70. 군 내 성폭력 사건 통보 매뉴얼 사건통보 의무 조항 등을 추가한 '22년도 성희롱' 마련, 양성평등정책담당과 협의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을 국방부에 배포하였음
  - 또한,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국비지원 군 성폭력 피해자 특화상담소를 선정하였음

- 71. 현재 아동·청소년과 거주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고지하지 않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전국민에게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성범죄자알림e'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내 주변 성범죄자 찾기'\* 푸시 알림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음
  - \* 단말기 위치 및 특정 주소를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설정한 시간마다 알림으로 받을 수 있음
-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추진 하였음('21.11월)
- 72. 성매매 피해자에게도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임대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 o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여성폭력 피해자와 달리 별도의 자립·자활 지원체계를 운영 중에 있음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업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동작업장 등 자활참여자 지원사업을 통한 참여자지원금지급 및 성매매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쉼터 이외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그룹홈)을 운영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음
  - ※ 자활지원센터 신설 지원 ( $^{21년}$ 12개소 $\rightarrow^{22년}$ 13개소)
- 73. 대학생도 성매매 의무교육 대상 이 되도록 「성매매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개정을 통해 대상별 맞춤형 추가 교육 실시(대학생 성매매 예방교육 등) 가점 반영('23.1.)

- 74.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공동대응팀 제도를 참 고하여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공 동대응시스템 구축 등 가정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전국 18개소)를 통해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협력 추진하고, 1366센터 중심으로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도입 추진
  - \* 관계기관 연계 실적('21년) : 334,858건
  - \*\* '23년 시범사업 예산 확보
-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방안 등 포함 여성 폭력방지정책 '22년 시행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 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자립지원금 제도의 개 선방안을 마련할 것
- 7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설협의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의 지급절차 개선 방안 마련 및 사업지침 개정('22.1월)

- 76.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를 다 루는 기관 종사자들에게 피해자 의 신변보호에 관한 교육을 수행 하고, 피해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 하며, 제3자가 열람 제한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 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재발방 지대책을 마련할 것
- ㅇ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 개인정보보호 관련 '22년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피해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행안부 협업, '22.8.31. 공포·시행)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 개선으로 가해자 등의 피해자 주소정보 열람 차단

# 77.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특정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접근금지 조치가 행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세부 절차를 협의하고, 현장종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며, 접근금지 제도 관련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할 것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가정폭력 관련 법령(개정사항 포함) 교육 실시
- \* '21년, '22년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에 가정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 교육과정 운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행안부 협조, '22.8.31. 공포·시행)
-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홍보 리플릿 배포(행안부 협조, '23년 9월)

- 78. 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간 성 범죄자 신상정보의 신속한 공 유, 경찰의 등록정보 진위 확인 및 변경주기 축소, 전자장치 피 부착자의 고지의무 기한 설정, 현행화가 빠른 지도정보시스템 이용 등 국민에게 공개·고지되 는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성범죄자알림e '공개·고지정보의 정정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실거주지 위치 표출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화 주기가 빠른 민간지도\* 연계·활용 중('21.11월~)
  - \* 국토부 브이월드 → 네이버 지도
- 성범죄자의 사진 및 실제 거주지 정보 현행화 및 정확성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 \* △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 현행화를 위한 안건 논의(연 3회, 법무부·여가부·경찰청)
  - \* △ 정보 확인이 시급한 경우, 법무부·경찰에 수시로 자료 확인 요청 등

- 79.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 도의 인지도 및 열람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검토할 것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열람률 제고 추진
  - 순차적으로 발송했던 모바일고지를 동시발송으로 개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22.1월)
  - \* (순차발송) 카카오톡→네이버→우편 (동시발송) 카카오톡·네이버 →우편
  - 열람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고지 발송 후 6 시간이 경과되면 미열람자에게 재알림을 제공 하여 열람률 제고에 노력함('22.6월)
  - \* (기존) 인증서발급 必, 인증서비번 입력 후 열람 (개선) 인증서발급 X, PIN번호(숫자6자리) 입력 후 열람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의 인지도 및 열람률 향상을 위하여 홍보 강화하겠음
- 8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에 메타버스 등 신종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내용 을 포함하여 조사를 속히 실시 할 것
- '2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예비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3년 제1차 조사 추진 중(~12월)

- 81. 청소년 성매매 피해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랜덤 채팅앱 운영자 처벌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을 마련하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고 충을 청취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 제작 및 청소년 성매매 피해 실태 및 지원 현황 파악('2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상담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및 청소년 성매매 모니터링 강화('23.2월)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개정 및 랜덤채팅앱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23.2월)

- 8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특 히 재범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등에 따라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포함)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약물치료 명령 선고가 가능함
- 실태조사를 시급히 수행할 것
- 83. 아동·청소년 성착취 관련 범죄 이 '2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예비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3년 제1차 조사 추진 중(~12월)
- 무신고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피 해아동·청소년의 보호 관련 법률 의 개정 사항에 대한 홍 \*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반영('22.1월) 보를 확대하고, 교육을 수행할 것
- 84. 학교 구성원, 학부모 및 1차 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사항 홍보를 위해 학교· 수사기관 등에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고, 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관련 내용 반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웹홍보물)배부 : '21년 55,100부

    - \* 성매매예방교육 콘텐츠 신규 제작 배포('22.3월)
    - 이 시도교육청 협조요청, 공공앱(대한민국 청소년 등)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추진
- 85.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의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대 응체계를 마련하고, 그루밍 범 죄 처벌 및 신분비공개·위장수 사 관련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 안착화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음
- 또한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온라인 그루밍 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였음 ('22.5월)

- 8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월 간병비 지원액을 확대하고, 간병비 지원 신청 시 담당 직원이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간병비 지원 사업 담당 직원을 정규직화 할 것
- '22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간병비 1.56억원을 증액하였음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담당인력의 정규직 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음

- 87.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치료사업 및 보호시설 운영비 등 지원사업에 지급되었던 국고보조금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법인 청산 및 잔여재산 처분과 상관없이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 87.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치료사 법원 판결에 따라 혐의 사실이 유죄로 판단 될 업 및 보호시설 운영비 등 지원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조치 예정
  - ※ 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주무관청인 외교부에 재산 동결 등 협조 요청('21.2.10, '21.3.9),
  - '23.9.20. 항소심 유죄 선고(업무상 횡령·보조금법 위반 등)

- 88. 서울 기억의 터에 이름이 누락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대 상으로 이름 기재 희망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건립추진 위원회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명단을 확인할 것
- 88. 서울 기억의 터에 이름이 누락 국정감사 시 관련 자료를 여가위 위원실에 제출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대 하였음("21.10.22.)

# 8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시 설인 나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 대책 강구, 실태조사 보완, 학대 및 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관 리·감독 등 나눔의집을 정상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 련할 것

- 90. 공공기관 내 성비위 통계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취업규칙에서 성비위 행위를 별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관리할 것
- 91. 여성폭력 예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 율 및 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공무원 성범죄 감소 대책도 마련할 것

-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행되었음
- 나눔의집 이사진에 대한 해임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 완료됨
-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 중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등 징계 규정에 성희롱·성폭력 등 관련 별도의 '성 비위' 항목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함
  - \*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대상 협조요청 공문 발송 ('21.12월)
- 다양한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탑재
  - \* ('21년)고위직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강의안(성희롱· 성폭력),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성폭력)
- 아울러 공무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를 개선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3에 근거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 실시('22년~)

- 92. 공공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 통계 및 공공기관등에 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에 대한 기본 통계를 관리하고, 각 공공단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공부문의 사건통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등에 대한 기본통계는 관리하고 있으며,
  - 보다 체계적인 통계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의무 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단체에서도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지침 표준안' 안내('22.7.13.)
- 93. 공공부문 전체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고충상담원 지정, 상담창구 마련 등의 성희롱·성 폭력 방지조치를 완료할 수 있 도록 속히 조치할 것
-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 점검결과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94.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 력 신고센터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의 내실화 방 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조직문화 개 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 런할 것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음
  -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매년 공표 추진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기관에 대한 제재조 치(시정명령 및 과태료) 법적 근거 마련
    - \* 성폭력방지법 개정('23.4.18, 시행 '24.4.19.)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95.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 바라기센터 전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할 것
- 해바라기센터 평가('21년)시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실행'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고충처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도록 안내하 였음('22.8)
- 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면 밀한 보조금 관리 방안을 검토 할 것
- 96. 국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여성폭 | ㅇ 성폭력방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 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근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음
  - \* 여가부, 시·도 및 시·군·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또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3년 주기 법정평가를 통해 회계운영을 포함한 인력 및 지원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등을 평가·관리하고 있음
    - \* '22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 실시중('22.5~12)
  - 0 앞으로도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기 타]

- 업무평가 부진과 국민들의 반복 되는 폐지 여론에 대해 객관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97. 여성가족부에 대한 연이은 정부 | ㅇ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영역별로 현장방문과 가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맞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22.10.6)
    - \*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신설하고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

# 98.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할것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의사소통 및 협력을 긴밀히 하여 다부처 사업 등 유관 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 세종시 이전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 개정 결과에 따를 것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99.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성 평등 강연 영상 자료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고, 교육 취지와 달리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수요자·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작 의도와 다르게 수요자 입장에서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 반영하였음('21.5월)
  - 양평원 제작 콘텐츠에 대한 일몰제 도입으로 '19년 개발 콘텐츠 전체 품질관리를 위해 비공개 처리('21.8월)
  - 앞으로 교육 콘텐츠 제작 시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세밀하게 검토하고, 수요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100.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기에 청소년이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활동 개발\* 및 청소년 일상회복 지원활동\*\*을 추진함.
  - \* 교과·범교과 연계과정(포상활동, 봉사활동, KYWA형 PBL 등), 국립청소년시설 특화 프로그램 개발('22년, 95종)
- \*\* 취약계층청소년(가족) 등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 역량 회복을 위한 활동 지원('22년, 연112,818명)
- 디지털 리터러시 등 청소년활동을 연계한 콘텐츠를 생산·보급하여 청소년활동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조성함.
  - \* 국립청소년시설 통합 메타버스 공간 구축 및 콘텐츠 개발(9종), 디지털 기반 진로프로그램 개발·운영
- 101. 겸직 및 수의계약 관련 규정 재정비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 감독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할 것
- 구매·계약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20년)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21.9~현재)\*을 추진함
  - \* 계약심의위원회 인력풀 구성(11명), 공정계약이행서약 의무징구, 퇴직자 영입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공직이해충돌방지제도) 확인 등
- 겸직 신청 및 허가 기준의 임의해석 방지를 위한 규칙을 마련('21.4월)\*하였으며, 인사규정 내 징계 제도\*\*를 강화('22.10월)함
  - \* 겸직 및 출수강 허가규칙('21.4.15. 전부개정)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1.12.30.) 기준을 준용한 청렴 의무 위반 시 징계양정기준 상향, 징계부과금 근거 마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교육('22.4~5월)
  및 운영지침을 제정('22.5월)하여 시행 중이며, 임
  직원 행동강령 개정('22.10월)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 장치를 강화함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102. 우리문화를 결혼이민자들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제대로 홍보·안내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포털(다누리) 외국어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현행화하여 양과질을 제고할 것
- 다누리포털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현행화 하여 양과 질을 제고하였음
  - 다누리포털 ISP를 통한 개선방향 마련(~'22.12월)
  - 다누리포털 정기적 정보제공 현행화(수시)
    - · 한국생활안내 현행화(8개부처 협조) 등
  - 신규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 ·정보더하기 e-book 추가 제작 및 제공
    - ·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번역 및 게시(수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103.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확보, 정규직 확대 등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부처와 함께 마련할 것
  - 재정당국과 '22년 수시증원, '23년 정기증원 협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정규직 7명을 추가 확보('22.8월)하였으며,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185백만원)하였음
  - 앞으로도 정규직 인력의 단계적 확대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 \* '24년 디성센터 정규직 증원 2명 협의 완료('23. 8월)